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28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6.

발 의 자:김상훈·박성민·김희국

김예지 · 김승수 · 신원식

송석준 · 추경호 · 권성동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물류시설단지 중에 도심지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은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하고 인근 주변을 포 함하여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어 있어 지리적 특성 상 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 이 있음.

이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「도시개발법」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 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7조제2항제6호, 제27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
- 7.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7조제3 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7조의2(조합설립의 인가 등)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과 관련한 사항은 「도시개발법」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개발구역"은 "물류단지예정지역"으로, "지정권자"는 "물류단지지정권자"로 본다.

제3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물류 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

시행자의 권리・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7조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 | 제27조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 |
| 자) ① (생 략) | 자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 | ② |
|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| |
|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| |
| 한다. |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6.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 |
| | 자 또는 그들이 물류단지개 |
| | 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|
| <u><신 설></u> | 7.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|
| |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|
| | 제27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 |
| | 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|
| | 체결한 신탁업자 |
| ③ ~ ⑤ (생 략)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제27조의2(조합설립의 인가 등) |
| |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 |
| | 과 관련한 사항은 「도시개발 |
| | 법」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|
| |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 |
| | 시개발구역"은 "물류단지예정 |
| | 지역"으로, "지정권자"는 "물류 |

시행) ① • 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단지지정권자"로 본다.

제31조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 제31조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 시행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는 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승인 을 받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신 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 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·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